

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

건축주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철거 대상 건축물	[] 건축허가 번호, [] 건축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
철거명령 내용	철거명령의 이행기한
	철거 범위 등 내용
	철거명령의 사유
	그 밖에 필요한 내용

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 또는
구청장



유의사항
1.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,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.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건축주는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